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891
----------	-------

발의연월일 : 2026. 5. 8.

발 의 자 : 박용갑 · 김영환 · 윤준병
박희승 · 황명선 · 차규근
이연희 · 염태영 · 정준호
이재관 · 백승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5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여가와 복지, 사회적 교류의 핵심 거점인 경로당 이용 수요도 급증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기준 전국 경로당 6만 9,061개 가운데 2층에 위치한 경로당이 3,275개, 3층에 위치한 경로당이 406개, 지하 경로당이 218개 등 1층이 아닌 곳에 설치된 곳이 3,899개에 달했으나,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698개에 불과하였음. 또한 노인복지시설에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의 보관시설 및 전동보장구 충전시설도 충분히 갖춰져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경로당 설치시 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경우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의 의무화하며, 노인복지시설에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의 보관시설 및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노령층의 편리한 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31조의3, 제37조제4항 및 제37조의2제3항 신설 등).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상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노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 등 이동보조기기의 보관시설 및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등(이하 “이용상 편의시설”이라 한다)을 충분히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전동보장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전동보장구 수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상 편의시설 설치 기준 및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로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인의 이

용편의를 고려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접근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7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접근 편의성 향상 및 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승강기 등 접근편의시설의 설치·개선, 노후 경로당의 개수·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제2항제1호 중 “제37조제4항”을 “제37조제4항·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로당의 접근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경로당으로서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는 3년 이내에 적합한 접근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31조의3(노인복지시설의 이용</u> <u>상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 ①</u> <u>노인복지시설의 시설주는 활체</u> <u>어, 노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u> <u>구 등 이동보조기기의 보관시</u> <u>설 및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등</u> <u>(이하 “이용상 편의시설”이라</u> <u>한다)을 충분히 갖추도록 노력</u> <u>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u> <u>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u> <u>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u> <u>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u>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u> <u>노인이 전동보장구를 안전하게</u> <u>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 비용의</u> <u>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u> <u>있으며, 전동보장구 수리지원센</u> <u>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u> <u>인복지시설의 이용상 편의시설</u> <u>설치 기준 및 전동보장구 수리</u> <u>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u> <u>복지부령으로 정한다.</u></p>

第37條(老人餘暇福祉施設의 設置)

① ~ ③ (생략)

<신설>

④ · ⑤ (생략)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 ② (생략)

<신설>

第43條(사업의 정지 등) ① (생략)

第37條(老人餘暇福祉施設의 設置)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로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인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접근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접근 편의성 향상 및 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승강기 등 접근편의시설의 설치·개선, 노후 경로당의 개수·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第43條(사업의 정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老人
餘暇福祉施設 또는 在家老人福
祉施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
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廢止를 명할 수 있다.

1. 제37조제4항 또는 제39조제4
항의 施設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 5. (생략)

③ · ④ (생략)

② -----

-----.

1. 제37조제4항 · 제6항-----

2. ~ 5.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